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48

발의연월일: 2021. 6. 7.

발 의 자:서영교・민병덕・박 정

서삼석 · 송재호 · 오영환

이용우 · 임오경 · 임호선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감면하고 있고, 신축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는 포항에서 각각 최대 규모 5.4, 4.6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2000년 이후로 최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건축물의 내진성능확보 및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 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①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 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 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 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u>년 12월 31</u> -----2024년 12월 31 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 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 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 진 · 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 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

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지진안 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 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 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 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율을 2021년 12월 3 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 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2024년 12월 31일
<u>.</u>
·.